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고, 그동안 과태료 금액이 법정 상한액(300만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미설치에 따른 1차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7조의3 및 제8조의3제2항)

지칭되는 대상이 명확하도록 수정하고, 긴 문장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면서 괄호 속의 괄호로 구성된 복잡한 문장을 풀어서 제시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추가(안 별표2)

- 1)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를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100	150	200
자.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4	50	100	150

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별표 2 제2호에 차목부터 하목을 타목부터 너목으로 하고,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 제3호의5	50	75	100
카. 법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2항	30	50	7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 ----- ----- ----- 제1호가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가목에 따른 ----- 소방안전관리자 ----- ----- ----- ----- ----- ----- ----- ----- ----- -----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대응매뉴얼 교육은 <u>재난현장에</u> <u>서 응급의료와</u>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재난현장의</u> <u>응급의료</u> 및 ----- ----- ----- ----- -----. ③ (현행과 같음)
---	---